**제1조 （적용범위）**

새로운 제품, 용역, 기술을 창조 개발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개발활동에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목적）**

신제품이나 신기술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이 기대효과를 획득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동기간 동안에 발생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경영성과에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함이다.

**제3조 （용어정의）**

동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라 함은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한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조사활동을 말하며, 연구활동의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가.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나.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선택, 응용하는 활동

다.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라.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

1. “개발” 이라 함은 상업적인 생산이나 사용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을 말하며 개발활동의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가. 생산 또는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나.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지그,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다. 상업적 생산목적으로 실현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는 활동

라.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하여 최종적

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마. 업무 자동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응용소프트웨어의 개발활동

1. 연구활동 및 개발활동에 속하지 않는 예는 다음과 같다.

가. 상업적 생산의 초기단계에서의 시험생산 및 기술적 보완

나. 일상적 제품검사를 포함한 상업생산중의 품질관리

다. 상업생산중의 고장에 대한 수리

라. 기존 제품의 품질개선을 위한 일상적 노력

마. 계속적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특정 요구 사항이나 고객의 요구에 따라 기존생

산능력을 유연성있게 변경하는 것

바. 기존 제품에 대한 계절적 또는 정기적 설계변경

사. 공구, 지그, 주형, 금형에 대한 일상적 설계

아. 특정 연구개발활동에만 사용되는 설비나 장치 이외의 설비나 장치의 제작, 재

배치. 시동과 관련된 설계 등의 활동

**제4조 (연구활동 관련비용의 회계처리)**

연구활동 관련비용은 발생한 시점에 경상연구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제5조 （개발활동 관련비용의 회계처리）**

1. 개발비와 경상개발비의 구분

개발활동 관련비용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경상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가. 제품 등이 명확히 정의되고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나. 제품 등을 생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다. 당해 기업이 제품 등을 생산하여 판매 또는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마. 제품 등에 대한 시장이 존재하거나, 제품 등이 내부 사용 목적이라면 당해

기업에 유용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라. 개발과제를 완료하고 제품 등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

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1.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처리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의 자체개발에 소요된 비용이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개발비로 처리하고,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구입비용은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한다.

1. 개발비의 상각

가. 개발비의 상각연수

개발비는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한다.

나. 계정분류

개발비 상각액이 제조와 관련있는 경우에는 관련제품의 제조원가로，이외의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다. 연구개발활동을 중도에 중지한 경우는 인식 시기에 누적액을 전액 상각 처리

한다.

1. 개발비의 감액

가. 개발비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

수 가능가액의 차액은 개발비감액손실의 과목으로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나.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발비 잔액을

개발비 감액손실로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다. 감액된 개발비는 추후에 회복할 수 없다.

라. 개발비의 회수 가능가액은 개발 관련 제품 등의 판매나 사용으로부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개발에 소요되는 추가비용, 관련 제조비용, 그 제

품을 판매하는 데 직접 발생하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5. 기말재고

연구개발활동으로 구입한 물품이 기말시점에 미사용재고가 있는 경우는 재고조사

실시요령에 근거하여 저장품으로 대체 처리한다.

6. 공동연구개발비용

계약에 의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는 상기의 내용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조 (개발활동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원가)**

개발활동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한다. 직접 관련된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되었거나 소비된 재료원가, 용역원가 등
2. 무형자산의 창출을 위하여 발생한 종업원급여(기준서 제 1019호의 정의 참조)
3. 법적 권리를 등록하기 위한 수수료
4.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된 특허권과 라이선스의 상각비

**제7조 (주석사항）**

다음 사항은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기재한다.

1. 당해 연도에 발생한 연구비와 경상개발비

2. 개발비의 상각방법，상각기간

3. 개발비의 변동내용

1. 기초 금액
2. 당기중 증가된 금액
3. 당기중 상각한 금액
4. 당기에 인식한 감액손실
5. 기말 금액 （①+⓶-③-④）

**제8조 （연구개발비 명세서 등）**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하여는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해야 하

며 부속명세서의 양식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요령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요령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